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10 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 김소희·장동혁·서일준

박덕흠 • 김성원 • 김상훈

이성권 · 김예지 · 최형두

조경태 · 이달희 · 백종헌

우재준 · 김대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·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.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,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. 또한,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.

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,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·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757호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"활용할 수 있다"를 "활용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필요한 시책"을 "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시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757호 기후ㆍ기후변화 법률 제19757호 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 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 리오의 생산 등) ①・② (생 리오의 생산 등) ①・② (현행 략) 과 같음)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•녹색성장 기본법 _ 제10조제 2항제5호, 제11조제2항제3호,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. 제 40조제1항,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 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 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-----활용하여야 한다. 있다.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 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----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시 책 -----